행정처분기준(제17조 관련)

1. 일반기준

- 가. 위반행위가 둘 이상인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르고,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.
- 나.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1년(제2호가목의 경우에는 2년)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.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.
- 다.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・내용・횟수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. 이 경우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, 허가취소또는 등록취소인 경우에는 6개월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 또는 법 제18조의2에 따른 과징금 처분으로 감경(법 제1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, 제32조제1항제1호・제3호・제3호・제15호 및 제35조제1항제1호・제2호・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)할 수 있다.
 - 1)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
 - 2)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그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
 - 3) 위반 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, 5년 이상 가축분뇨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거나, 가축분뇨관련영업, 처리시설 설계·시공업을 모범 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
 - 4) 위반 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인하여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
 - 5) 그 밖에 시설설치자, 가축분뇨관련영업자 또는 처리시설 설계 · 시공업자

에 대한 정부 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
2. 개별기준

가. 배출시설설치·운영자 또는 배출시설설치자가 설치한 처리시설의 운영자 에 대한 행정처분

에 대한 행정처분					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귀 반사 왕	- 근기합병 -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	법 제18조	허가취소			
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	제1항제1	또는			
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	호	폐쇄명령			
2) 정당한 사유 없이 3년 이상 가	법 제18조	허가취소			
축사육을 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2	또는			
	ই	폐쇄명령			
3) 가축사육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	법 제18조	허가취소			
여 해당 배출시설을 철거하거나	제1항제3	또는			
배출시설의 멸실이 확인된 경우	호	폐쇄명령			
4)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	법 제18조	사용중지	폐쇄명		
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에	제1항제4	명령	려		
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	ই				
5)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	법 제18조	경고	사용중	사용중	허가취소
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5		지명령 1케의	지명령 2개월	또는 폐쇄명령
	ই		1개월	Z/11 결 	베페명명
6)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배	법 제18조				
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가	제1항제6				
아닌 곳에서 법 제11조제1항 또	ই				
는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					
치허가 또는 신고 없이 배출시설					
을 설치한 경우	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허		사용중지	폐쇄명		
가를 받지 않은 경우		명령	궝		

		1개월			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신		사용중지	사용중	폐쇄명	
고를 하지 않은 경우		명령	지명령	령	
7) 법 제11조제2항 및 제3항에 따	법 제18조	1개월	2개월		
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	제1항제7				
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그 배	ই				
출시설을 변경한 경우 가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		경고	사용중	사용중	허가취소
경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			지명령	지명령	
나)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변		경고	1개월 경고	2개월 사용중	사용중지
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		지명령	명령
다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변		경고	경고	1개월 사용중	2개월 사용중지
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				지명령	명령
				1개월	2개월
8)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처리시	법 제18조				
설을 설치 • 변경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8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	<u>ই</u>	경고	사용중	사용중	허가취소
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	지명령	지명령	또는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		경고	1개월 개선명	2개월 사용중	폐쇄명령 사용중지
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	궝	지명령	명령
9)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	법 제18조			1개월	2개월
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아	제1항제9				
니하고 배출시설 및 처리시설을	ই				
사용한 경우 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		경고	사용중	사용중	사용중지

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	지명령	지명령	명령
		- 3	1개월	2개월	3개월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		경고	경고	사용중	사용중지
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		지명령	명령
10) 법 제1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	법 제18조			1개월	2개월
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	제1항제10				
an none one con	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			
가)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설	_1_	경고	허가취		
치허가 대상시설인 경우			소		
나)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설		경고	경고	사용중	사용중지
치신고 대상시설인 경우				지명령	명령
11) 법 제17조제5항에 따른 개선명	법 제18조	경고	사용중	1개월 사용중	2개월 사용중지
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	제1항제11		지명령	지명령	명정
	ই		1개월	2개월	3개월
12) 법 제18조의3제2항에 따라 확	법 제18조	허가취소	허가취		
인・검사한 결과 방류수수질기	제1항제12	또는	소 또는		
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합하	호	폐쇄명령	폐쇄명		
지 않은 경우로서 해당 배출시			령		
설을 개선하거나 처리시설을 설					
치・개선하더라도 방류수수질					
기준 및 퇴비액비화기준에 적					
합하게 될 가능성이 없다고 인					
정되는 경우					
13) 법 제18조제1항제5호부터 제11	법 제18조	허가취소			
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여 사용	제1항제13	또는			
중지명령을 받고 해당 명령을	ই	폐쇄명령			
이행하지 않은 경우 나 재활용신고자에 대하 해졌처					

나. 재활용신고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	
T U/18	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1	1차	2차	3차	4차	
1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0조제2항	법 제27조	경고	처리금지	처리금지	폐쇄명령	
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	제6항제1호		명령	명령		
은 경우			1개월	3개월		
2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5조에 따른	법 제27조	경고	처리금지	처리금지	폐쇄명령	
준공검사를 받지 않고 그 시설을	제6항제2호		명령	명령		
운영한 경우			1개월	3개월		
3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17조제5항	법 제27조	경고	처리금지	처리금지	폐쇄명령	
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	제6항제3호		명령	명령		
은 경우			1개월	3개월		
4) 재활용신고자가 법 제27조제5항	법 제27조	경고	처리금지	처리금지	폐쇄명령	
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	제6항제4호		명령	명령		
은 경우	- 웨기 - 1 H - 1 7		1개월	3개월		

다. 가축분뇨관련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위반사항	근거법령	행정처분기준			
기원시경	느기비행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	법 제32조	허가취소			
로 허가 •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신	제1항제1호				
고를 한 경우					
2) 허가를 받은 후 1년 이내에 영업을	법 제32조	경고	허가취		
시작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	제1항제2호		소		
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을					
한 경우					
3) 영업정지기간 중에 영업을 한	법제32조	허가취소			
경우	제1항제3호				
4)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	법 제32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까지에 따른 처리시설의 설치기	제1항제4호		지	지	6개월
준 등을 위반한 경우			1개월	3개월	
5) 법 제15조에 따른 배출시설・	법 제32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처리시설의 준공검사를 받지 않	제1항제5호		지	지	6개월
고 배출시설・처리시설을 사용한			1개월	3개월	
경우					
6) 법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같	법 제32조	영업정지	허가취		

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	제1항제6호	6개월	소		
는 행위를 한 경우					
7)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배출시	법 제32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설ㆍ처리시설의 관리기준을 위	제1항제7호		지	지	6개월
반한 경우			1개월	3개월	
8)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	법 제32조				
위반하여 가축분뇨를 수집 • 운	제1항제8호				
반 또는 처리한 경우					
가) 수집・운반한 가축분뇨를 고의		영업정지	허가취		
또는 중대한 과실로 처리장소		6개월	소		
외의 장소에 버린 경우		_			
나) 그 밖의 수집 · 운반 및 처	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리기준을 위반한 경우			지	지	6개월
9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	법 제32조	영업정지	1개월 허가취	3개월	
받은 업종 외의 영업을 한 경우	제1항제9호	6개월	소		
10)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변경	법 제32조	영업정지	영업정	영업정	허가취소
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	제1항제10	1개월	지	지	
경우	ই		3개월	6개월	
11)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허가기	법 제32조				
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제1항제11				
과) 기스트러지 원리키즈제 미디.	ই	거ㄱ	어 이 기	선 이 기	=1 =1 =1 2
가) 기술능력이 허가기준에 미달		경고	영업정	영업정	허가취소
하게 된 경우			지	지	
나)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		경고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허가취소
경우			지	지	
다)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가 허가		경고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허가취소
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		지	지	

라) 흡인식 차량이 허가기준에 미		경고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허가취소
달하게 된 경우			지	지	
마) 처리시설이 허가기준에 미달		영업정지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허가취소
하게 된 경우		1개월	지	지	
12) 법 제28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	법 제32조	영업정지	3개월 허가취	6개월	
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	제1항제12	6개월	소		
성명을 사용하여 가축분뇨관련	ই				
영업을 하게 하거나 허가증을					
빌려준 경우					
13)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준을	법 제32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위반하여 요금을 받은 경우	제1항제13		지	지	6개월
14)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가축분뇨	호 법 제32조	경고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영업정지
의 수집・운반・처리 및 시설관	제1항제14		지	지	6개월
리의 기준과 준수사항을 지키	ই		1개월	3개월	
지 않은 경우 15)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까	법 제32조	허가취소			
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	제1항제15	-1/111-			
우	· 기1 8 시113 · 호 본문				
T 16) 법 제37조의3제1항에 따른 전	법 제32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자인계관리시스템의 운용 방	제1항제16		지	지	6개월
법, 절차 등 운영관리에 관한	<u>ই</u>		1개월	3개월	
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17) 법 제37조의3제2항을 위반하	법 제32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
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그 소속	제1항제17		지	지	
공무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	ই		1개월	3개월	
인계ㆍ인수 또는 처리 등에 관					

한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					
협조하지 않은 경우 18) 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장부를	법 제32조				
기록・보존하지 않거나 거짓	제1항제18				
으로 기록한 경우 가) 장부를 기록·보존하지 않은	ठ्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경우			지	지	6개월
나) 장부를 거짓으로 기록한 경		영업정지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허가취소
Ŷ		1개월	지	지	
19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	법 제32조		3개월	6개월	
따른 보고 · 자료제출을 거부하	제1항제19				
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 출	ই				
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해하거					
나 기피한 경우 가)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거		영업정지	영업정	영업정	허가취소
나 거짓으로 한 경우		1개월	ス	지 6개	
나)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		경고	3개월 영업정	월 영업정	영업정지
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		ス	지	6개월
			1개월	3개월	

라. 처리시설 설계 · 시공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

	1, 4 0 0 1	- , -			
위반사항	근거법령		행정처	분기준	
기건/기정	- 는/기업명	1차	2차	3차	4차
1)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	법 제35조	등록취소			
으로 등록을 한 경우	제1항제1호				
2) 영업정지기간 중에 신규계약	법 제35조	등록취소			
을 체결하여 영업을 한 경우	제1항제2호				
3)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	법 제35조				
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	제1항제4호				
가) 기술능력이 등록기준에 미		경고	영업정	영업정	등록취소

달하게 된 경우			지	기	
N 24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 2			1개월	3개월	
나) 사무실이나 실험실이 없는		경고	영업정	영업정	등록취소
경우			지	기	
다) 갖추어야 할 실험기기 또는		경고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등록취소
제도설비가 등록기준에 미			지	지	
달하게 된 경우 4)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등록을	법 제35조	경고	1개월 등록취	3개월	
한 후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	제1항제5호		소		
하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					
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					
5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변경등	법 제35조				
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	제1항제6호				
영업을 하거나 부정한 방법으					
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					
한 경우					
가)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		영업정지	영업정	영업정	등록취소
을 한 경우		1개월	지	지	
나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등록		영업정지	3개월 영업정	6개월 등록취	
을 한 경우		3개월	지	소	
다)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		경고	6개월 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을 한 경우			지	지	6개월
라) 부정한 방법으로 변경신고		영업정지	1개월 영업정	3개월 영업정	등록취소
를 한 경우		1개월	지	지	
6) 법 제34조제6항을 위반하여 다	법 제35조	영업정지	3개월 등록취	6개월	

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 또는	제1항제7호	6개월	소		
성명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게					
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7) 법 제34조제7항에 따라 준용되	법 제35조	등록취소			
는 법 제31조제1호부터 제3호	제1항제8호				
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					
<u></u>					
8) 처리시설의 설계 또는 시공을	법 제35조	영업정지	등록취		
부실하게 하거나 도급받은 공	제1항제3호	6개월	소		
사의 전부를 하도급한 경우					
9) 위 8) 외에 법 제34조제8항에	법 제35조	경고	영업정	영업정	영업정지
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은	제1항제3호		지	지	6개월
경우			1개월	3개월	
10)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	법 제35조				
따른 보고ㆍ자료제출을 거부	제1항제9호				
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 또는					
출입・검사 등을 거부・방해					
하거나 기피한 경우					
가) 보고·자료제출을 거부하		영업정지	영업정	영업정	허가취소
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		1개월	지	지 6개	
나) 출입·검사 등을 거부·방		경고	3개월 영업정	월 영업정	영업정지
해하거나 기피한 경우			ス	괴	6개월
			1개월	3개월	